

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67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2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22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농촌용수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·관리
-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

나.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(안 제9조)

- 운영관리위원회
 -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
 - 용수구역개발,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
- 군 위원회
 -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, 취합
 - 용수구역개발, 관리보전, 계획수립 추진

다.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(안 제18조)

- 농촌 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
-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
-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
- 기타 농촌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물 부족시대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구축과 수자원의 개발운영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
- 농림부의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
- 다만, 농촌용수계획과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운영사항, 농촌용수 오염방지 대책 등이 고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, 또한 동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용어가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지, 자구수정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9조의 운영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인지
- 답 : 군수, 부군수 등 일부 공무원과 지표수, 지하수, 전문기술인 등 농촌 용수와 관련이 있는 덕망있는 민간인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.
- 문 : 안 제17조에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 제21조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
- 답 : 안 제21조는 필요할때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12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